

[별표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5. 01. 01기준)

(단위:원)

방문당 시간	서비스수가	'25년 본인부담금(요일별)		
		15%	9%	6%
30분	16,940	2,495	1,524	1,016
60분	24,580	3,687	2,212	1,474
90분	33,120	4,968	2,980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29
150분	49,160	7,374	4,424	2,949
180분	55,350	8,303	4,981	3,321
210분	61,670	9,251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2	4,081

※ 산정방법 : 해당급여 1일당 비용(요일액) × 해당월 횟수

※ 본인부담금 감경여부는 노인장기요양정보시스템 변경확인후 반영함

○ 등급별 월한도액 및 최대 본인부담금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년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비율

가) 심야 22시이후 06시 이전에 급여제공, 일요일 : 30% 가산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50% 가산

다) 월한도액 초과 또는 비급여항목 발생은 본인부담금 추가청구함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 원)

구분	서비스 수가	본인부담 (15%)	본인부담 (9%)	본인부담 (6%)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7,783	5,188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6	7,017	4,678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4,382	2,921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